

-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시행자와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 간 합의서 -  
- 통지 및 조건부 수락 -

본 합의서의 내용은 법률, 윤리원칙, 의학연구, 정부기관 및 코로나19 RT(역전사 효소)-PCR(중합 효소연쇄반응) 테스트 키트 제조업체의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 합의서는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와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시행자들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RT-PCR 검사 및/또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자도 포함) 간의 합의서입니다. 본 합의서에 명시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

이름: \_\_\_\_\_

다음 중 한가지에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성인 미성년자

성미와 성주 :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기타 연락처(있는경우): \_\_\_\_\_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시행자들 (이하)**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을 시행하는 원인 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권한있는 대표자**

이름: \_\_\_\_\_

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대체 연락처 및 신분증명: \_\_\_\_\_

**우려 병에 관한 강제 처분 할 정부 기관의 권한**

이름: \_\_\_\_\_

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대체 연락처 및 신분증명: \_\_\_\_\_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에게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을 시행하는 자 (간호사, 의료 서비스위원회 또는 기타)**

이름: \_\_\_\_\_

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대체 연락처 및 신분증명: \_\_\_\_\_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RT-PCR 검사 및/또는 의료적 처치 제조업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

전문가 이름 : \_\_\_\_\_

대표자 이름: \_\_\_\_\_

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대체 연락처 및 신분증명: \_\_\_\_\_

**본인은 본 합의서를 통하여 다음의 조항, 조건, 공표 및 입장에 동의합니다:**

#### 소위 코로나19 관련 일반사항

1.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존재하고 SARS-CoV-2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식별’ 이라는 문서에서 이전의 세 가지 연구를 토대로 SARS-CoV-2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라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실제로 언급된 그 세 가지 연구는 모두 SARS-CoV-2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균이라고 판단하기를 강력히 거부했다.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업계 표준에 따라 SARS-CoV-2를 정제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둘은 바이러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9][40].

2.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입수한 정보를 통해 보건 데 한국 보건복지부[6] 및 와 미국 질병관리본부[7]에 따르면 코로나19에는 발열, 피로, 마른 기침, 두통, 코막힘, 콧물, 인후통, 미각 혹은 후각의 상실, 설사를 증상으로 하는 일반 감기나 계절성 독감과 구별되는 특유의 증상이 없다.
3.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입수한 정보를 통해 보건데 한국 질병관리본부[9]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무증상 코로나19 양성반응자가 훨씬 많고, 코로나19 양성반응자 중 80%가 전혀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4.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계절성 독감과 대등한 누적 입원율을 가지고 있다 [11].
5.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에 따르면, 소위 코로나19는 실제로 일반 감기나 계절성 독감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 일반적 법률 근거

6.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 1항~5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하에도 동일하게 가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1] 제42조는 인체유래물의 샘플을 추출하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러한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2호)[2]에 의해 인체, 또는 인체로부터 수집되거나 추출된 조직, 세포, 혈액 또는 체액과 같은 인체의 구성요소 또는 그러한 구성요소와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으로 정의된다.
7.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및

제11조 ①의 4호에 규정된 감염병병원체검사와 제2조 13호, 제11조 ② 및 제16조의2 ①의 실험실 검사 (이하 통칭하여 "감염병병원체검사")에 코로나19 RT-PCR 검사, 항체 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8.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병원체검사에는 상기 6호에 정의된 인체유래물 샘플을 사용해야 한다.
9.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병원체검사는 코로나19 RT-PCR 검사의 경우와 같이 인체유래물 샘플의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3조의 규정에 해당된다.
10.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병원체검사에 사용되는 인체유래물이 감염병병원체검사, 의학적 치료 및 백신의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된다.
11.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에서 감염병병원체검사 결과가 연구 및 통계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된다.
12.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에서 9항~11항에 따라 대상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수집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51조에 의거하여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13.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본인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에게 동법 제37조 4호 및 제51조 6호에 따른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서 채취한 인체유래물질의 유전자검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66호)[3] 제8조의 경우

등과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및 제51조 ⑤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15.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의 규정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및 제51조 ⑤의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본 합의서 7항의 감염병병원체검사가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무동의 추출 및 인체유래물 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의 규정은 동법 제11조 ① 4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해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사람은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 동법 제2조 15-2호를 통해 질병의 증상이 있었거나 질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었음을 내포한다.
17.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15항 및 16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의 규정이 관할 법원에 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및 제51조 ⑤의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의 규정은 동법 제16조의2 ① 1~9호에 명시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제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해 보고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18.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서 35항~41항에 따라 무증상 환자에 대해 그 사람이 그 질병의 증상을 가졌던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19 RT-PCR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이다.
19.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15항~17항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및 제 51조 ⑤의 특수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3조 ②의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감염병병원체검사를 위해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서면동의의 필요성은 여전한데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7조가 계속 적용되고 인체유래물질 관련 무동의 조항을 허용하는 어떠한 특별한 환경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③은 강제처분은 본 합의서 7항에 기술된 감염병병원체검사가 아닌 조사 및 진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7항에 기재된 감염병병원체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③항에 명시된 조사 및 진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론되어서는 안된다.
22.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④에 규정된 검사는 동법 제11조 ① 4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동법 제13조 ②에 규정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의미한다.
23.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13조 ②의 감염병병원체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42조 ④는 감염병병원체검사를 포함하지 않는 조사 및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4.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2-2호의 벌칙은 동법 제13조 ②에 규정된 감염병병원체검사의 거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검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5.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염증 관리 및 예방법 제80조 2-2호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를 침



해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6.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5호의 벌칙은 동법 제42조에 명시된 조사 및 진찰의 거부에만 관련되며, 동법 제16조의2 ① 1호~9호에 명시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검사의 거부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27.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① 1호~9호에 명시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감염병병원체검사의 제안은 처벌받지 않고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28.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2조는 조사나 진찰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가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29.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추출하고 수집하는 것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법 제68조 ⑨의 벌칙의 대상이 된다.
30.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법학회에 따르면 사전동의 없이 시행된 침습적 시술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4].
31.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항에 따라 서면동의 없이 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추출하고 수집하는 것은 형법 (법률 제17265호) [5] 제260조에 따른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간주되어 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32.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벌칙을 가하겠다는 위협, 구금, 격리 등의 위협으로 서면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추출하여 수집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로 간주한다.

임상진단, 무증상환자, 법적 문제 및 의료과실 관련사항

33.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6항~3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②에 설명된 내용에 따라, 동법 제42조의 조사 및 진찰은 설문 조사를 통한 면담 및 질병의 증상 확인과 같은 임상진단으로 제한되며, 서면동의 없이는 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수 없다.
34.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보건당국에 한국 보건복지부[6] 및 미국 질병관리본부[7]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발열, 피로, 마른 기침, 두통, 코막힘, 콧물, 인후통, 미각 혹은 후각 상실, 설사 증상이 있는 일반 감기 또는 계절성 독감과 구별되는 특유의 증상을 갖지 않는다.
35.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3항 및 34항에 따라 임상진단만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상진단만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진단은 오류의 위험이 높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2호) 제27조에 따른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8].
36.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세계보건기구의 진술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9][35][36].
37.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및 FDA 승인 한국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 제조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RT-PCR 검사는 무증상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설계 또는 검증된 것이 아니다 [18][19].
38.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6항 및 37항에 따라 공중보건 공무원 및 의료종사자가 무증상 환자에게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의 품질규격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④에 의해 금지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동법 68조 ⑩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39.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6항 및 37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의 2-2호 및 5호의 벌칙과 같은 겁박 전술과 처벌에 대한 위협을 통해 무증상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며 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강요죄에 해당한다.
40.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6항 및 37항에 따라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여 증상이 없는 사람을 코로나19에 대해 양성 판정하는 것은 오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윤리적이며 코로나19에 대해 양성 판정된 사람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 소송의 근거가 된다.
41.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항에 따라, 한국의 공중보건 공무원과 의료종사자들은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무증상 환자를 코로나19에 대해 양성으로 판정했으며, 이러한 무증상자 중 다수는 위양성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33][34][10].
42.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항, 36항, 37항 및 41항에 따라, 무증상 환자에게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코로나19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게 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 정책, 경제 및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 감염병병원체검사 및 테스트 관련사항

43.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의 추출 및 수집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서면동의가 기증자로부터 취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하에도 동일하게 가정함), 추출 및 수집된 인체유래물은 동법 제3조 ③에 따른 기밀정보이므로,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누설과 폭로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6조 ⑥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44.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추출 및 수집된 DNA는 코로나19 RT-PCR 테스트에서 연구목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RT-PCR 테스트 키트 제조업체의 선언에 있듯이 진단의 유일한 기초로 사용될 수는 없다 [12][13][14].
45.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추출 및 수집된 인체유래물은 검사 후에 폐기해야 한다.
46.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항에 따라 테스트 목적으로만 인체유래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약물 및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연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용도 금지된다. 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7.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는 SARS-CoV-2 바이러스를 탐지하지 못하며 아직 병원성 바이러스로 입증되지 않은 RNA만 탐지해 낸다 [36][37].
48.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RT-PCR 기술은 연구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질병 진단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12][13][14][15][16].
49.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및 독감을 포함한 다른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서도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5][17].
50.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서 37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RT-PCR 검사는 무증상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설계 또는 검증되어 있지 않다 [18][19].
51.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의 정확도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20][21][22].

52.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의 임상적 민감도 및 특이도는 확립된 적이 없으며 95% 이상의 정확도에 대한 주장은 실제 임상 시나리오가 아닌 고안한 샘플을 사용하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23][24][28].
53.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 증폭 사이클 수치(Ct.)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양을 안정적으로 탐지할 수는 없다 [25][26].
54.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 방법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모든 테스트는 테스트 키트 제조업체, 실험실 조건, 양성감지 규정 및 RT-PCR 증폭 사이클 수치(Ct.)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27].
55.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RT-PCR 검사 키트는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28][29][30][31].
56.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양성판정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19 RT-PCR 양성 판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31][32][28].

**주의 사항:** 각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에 관한 서명된 서명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당사자들의 서명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 개인의 서명: \_\_\_\_\_

코로나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 개인의 도장: \_\_\_\_\_

영문의 성명 정자체 표기: \_\_\_\_\_

직 접 연 락 가 능 연 락 :

\_\_\_\_\_  
\_\_\_\_\_

날짜: \_\_\_\_\_

(미성년자 경우) 가족 및 보호자의 서명 및 세대주의 서명 :

\_\_\_\_\_

(미성년자 경우)

\_\_\_\_\_

영문의 성명 정자체 표기: \_\_\_\_\_

날짜: \_\_\_\_\_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을 시행하다

---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을 시행하다

---

영문의 성명 정자체 표기: \_\_\_\_\_

직 접 연 락 가 능 연 락 :

---

---

날짜: \_\_\_\_\_

정부 기관 및 프로그램의 책임있는 서명 :

---

정부 기관 및 프로그램의 책임이 있습니다.

---

영문의 성명 정자체 표기: \_\_\_\_\_

직 접 연 락 가 능 연 락 :

---

---

날짜: \_\_\_\_\_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 대상자에게 코로나 19 조사 및 진찰을 시행하는 자 (간호사, 의료 서비스 분야 또는 기타)의 서명 : \_\_\_\_\_

코로나 19 검사 대상자에게 코로나 19 검사 및 의료 적 처치를 시행하는 자 (간호사, 의료 서비스 수준 또는 기타)의 검사 : \_\_\_\_\_

영문의 성명 정자체 표기: \_\_\_\_\_

직 접 연 락 가 능 연 락 :

---

---

날짜: \_\_\_\_\_



코로나 19 RT-PCR 검사 및/또는 치료 적 처치 조치의 허가자 대표자 서명 :

---

코로나 19 RT-PCR 검사 및/또는 치료 적 처치 조치의 대표자 :

---

영문의 성명 정자체 표기: \_\_\_\_\_

직 접 연 락 가 능 연 락 :

---

---

날짜: \_\_\_\_\_

## 참고 문헌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2호). [http://www.law.go.kr/법령/생명 윤리 and 안전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and안전에관한법률)
-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66호). <http://www.law.go.kr/법령/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4.한국의료법학회. 공중 보건법. 개정판. 동림사, 2004 p123.
- 5.형법 (법률 제17265호). <http://www.law.go.kr/법령/형법>
- 6.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 보건 복지 부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andbrdGubun=34andncvContSeq=185>
- 7.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 미국 질병 관리 본 부 .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8. 의료 사고 대책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법률 법 (법률 제 17212 호). [http://www.law.go.kr/법령/의료 사고 피해 구제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그리고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9. Kim JM et al. 코로나19를 가진 한국인 환자에서 분리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식별. 오송 공중 보건 Res Perspect 2020; 11 ① : 3-7.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045880/pdf/ophrp-11-3.pdf>
10. 우리나라 무증상으로 인한 비율 증가... 20 %는 퇴원까지 무증상. KBS 월드 라디오. 2020년 3

월 16일.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andSeq\\_Code=349850](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andSeq_Code=349850)

11. 데이, 마이클 코로나19: 중국 수치에 근거, 증상 사례의 5분의 4는 무증상입니다. BJM 2020년 4월 02일. <https://www.bmj.com/content/369/bmj.m1375>

12. 미국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 19 (코로나 19). 2020년 5월 22일.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vid-data/covidview/index.html>

13. 미국 식품의약국 (FDA) STANDARD M nCoV 실시간 검출 키트 (실시간 식품 키트). 긴급 사용 승인 2020년 4월 23일. <https://www.fda.gov/media/137302/download>

14. K- 진단 키트 효율 주자, '코젠 바이오텍'. KBS 월드 라디오. 2020년 3월 23일.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andmenu\\_cate=businessandid=andboard\\_seq=38174](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andmenu_cate=businessandid=andboard_seq=38174)

15. 창조적인 진단. SARS-COV-2 코로나 바이러스 멀티 플렉스 RT-qPCR 키트. <https://www.creative-diagnostics.com/sars-cov-2-coronavirus-multiplex-rt-qpcr-kit-277854-457.htm>

16. 맥도날드, 코비 감당하기 쿠션 천재 : 버클리 (Berkeley)의 가장 논란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 캘리포니아 동창회 UC 버클리 2019년 겨울. <https://alumni.berkeley.edu/california-magazine/winter-2019/intolerable-genius-berkeley-s-most-controversial-nobel-laureate>

17. 미국 식품의약국 (FDA) Allplex™ 2019-nCoV 분석. 긴급 사용 승인 2020년 4월 21일. <https://www.fda.gov/media/137178/download>

18. 미국 식품의약국 (F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20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nCoV) 실시간 RT-PCR 진단 병. 긴급 사용 승인 2020년 2월 20일. <https://www.fda.gov/media/134922/download>

19. 미국 식품의약국 (FDA) NeoPlex 코로나19Detection Kit 경고 사용 승인 2020년 5월 14일.

<https://www.fda.gov/media/138100/download>

20. 미국 식품의 약국 (FDA) 제조업체의 분자 진단 템플릿. 긴급 사용 승인 2020년 5월 13일.  
<https://www.fda.gov/media/135900/download>

21. 미국 식품 의약국(FDA) 에스디바이오센서(SD BioSensor)에 대한 승인 서신 2020년 4월 23일.  
<https://www.fda.gov/media/137303/download>

22. Zhuang G 외 코로나19환자와의 질병 중국 감염병학 전문가, 2020 년, 41 ④ : 485-488.  
<http://html.rhhz.net/zhlxbx/017.htm>[중국어 원본]

23. Zhuang G 외 코로나19환자와의 질병 중국 감염병학 전문가, 2020 년, 41 ④ : 485-488.  
<http://theinfectiousmyth.com/articles/ZhuangFalsePositives.pdf>[비공식적 영어 번역]

24. Prinzi A 외. 풍부한 음성 및 재감염 : SARS-CoV-2 RT-PCR 검사, 해결해야 할 문제, 미국 미생물 학 회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20 년 4 월 27 일 .  
<https://asm.org/Articles/2020/April/False-Negatives-and-Reinfections-the-Challenges-of>

25. Saah AJ 외“감도”및“특이성”재검토 : 분석 및 진단 설정에서이 조건의 의미. 내과 연보 (내과 의회). 1997년 1월 1일. <https://www.acpjournals.org/doi/10.7326/0003-4819-126-1-199701010-00026>

26. 크 로 우 D. 코 로 나 바 이 러 스 유행 성 이 론 의 결 함 .  
<https://theinfectiousmyth.com/book/CoronavirusPanic.pdf> p 14.

27. Zou L et al. 감염된 환자의 상부 호흡기 표본에서의 SARS-CoV-2 바이러스 부하. 뉴 잉글랜드 의 학 저 널 . 2020 년 3 월 19 일 ; 382 (12) : 1177-1179.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2001737>

28. 코로나 리서치. 코로나19 검사를 신뢰할 수 없는 10 가지 증거. [https://kolona-research.org/코로나19\\_검사를\\_신뢰할\\_수\\_없는\\_10\\_가지\\_증거.pdf](https://kolona-research.org/코로나19_검사를_신뢰할_수_없는_10_가지_증거.pdf)

29. 리사 외 코로나19SARS-CoV-2의 RT-PCR 검사의 원인. 의학 바이러스학 저널(Journal of Medical Virology). 2020년 3월 26일.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jmv.25786>
30. Young BE 외 SARS-COV-2 2020 년 3 월 3 일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62688>
31. 우한의 미스터리: 회복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검사 결과 음성... 다음에 양성. NPR 2020년 3 월 27 일 .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3/27/822407626/mystery-in-wuhan-recovered-coronavirus-patients-test-negative-then-positive>
32. 양성 연합 나옴 : 전문가 연합 뉴스 (Yonhap News Agency). 2020 년 4 월 29 일 .  
<https://en.yna.co.kr/view/AEN20200429007051320>
33. Zhuang G 외 코로나19환자와의 질병 중국 감염병학 전문가, 2020 년, 41 ④ : 485-488.  
<http://html.rhhz.net/zhlxbx/017.htm>[중국어 원본]
34. Zhuang G 외 코로나19환자와의 질병 중국 감염병학 전문가, 2020 년, 41 ④ : 485-488.  
<http://theinfectiousmyth.com/articles/ZhuangFalsePositives.pdf>[비공식적 영어 번역]
35. 코로나 19 상황 보고서 73. WHO ( 세계 보건 기구 ). 2020 년 4 월 2 일 .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402-sitrep-73-코로나19.pdf>
36. Gao M. et al. 무증상 SARS-CoV-2 보균자의 감염성에 관한 연구. Respiratory Medicine Volume 169, August 2020, 106026. 2020 May 13.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4611120301669>
37. 코로나 리서치. 코로나19과 관련된 잘못된 과학. [https://kolona-research.org/코로나19과\\_관련된\\_잘못된\\_과학.pdf](https://kolona-research.org/코로나19과_관련된_잘못된_과학.pdf)

